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기능보강,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능 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실과 개편 : 기존 1실 12과 ⇒ 변경 1실 13과(증 1과)

1) 과 신설 : 2개과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허 가 과
2) 과 통합 후 분리(새마을과 + 지역개발과)
 가) 문화체육정보과
 나) 새마을개발과
3) 과 폐지 : 1개과 (자치혁신과)
 ⇒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로 업무이관

4) 명칭변경 : 4개과
 가) 종합민원처리과 ⇒ 민원봉사과
 나) 산 업 과 ⇒ 친환경농정과
 다) 산 림 축 산 과 ⇒ 산림과
 다)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별첨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과장, 소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정보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허가과(여유기구)를 둔다.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4. 광역행정 관련 업무
5. 공약사항 관리

6.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7.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평가
8. 각종 지시사항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배정에 관한 업무
10.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1. 기채·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2.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총괄)
1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15. 군정홍보 및 보도
16.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
17. 여론정보 자료수집
18. 군 행정의 감사
19.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20.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21.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22. 법제 및 소송 업무
23. 각종통계 생산 및 관리
24.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25. 지역혁신계획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지원
26. 균형발전업무추진 총괄
27. 지역특구사업 추진 및 신규특화발전특구사업 발굴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서무, 보안,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식 및 행사
4. 방위지원 본부 운영
5.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6.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후생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8. 군, 의회,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9. 공무원의 인사, 평정, 임용, 표창, 징계
10.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

11. 총액인건비 관련업무
12.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제회, 적십자회비
13.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
14.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15. 공무원노조법 제·개정 및 시행에 따른 준비
16. 공무원노조 출범관련 연수, 교육, 각종 홍보계획수립 추진
1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관련자료 준비 등
18.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19.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20. 읍면 기능전환 업무
21.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22. 선거 및 국민투표
23.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24. 행정서비스 헌장제
25. 지방분권화 업무
26. 자체업무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27. 고객관리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개선
28.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업무 지원 등 교육업무 전반
29. 혁신분권 업무 총괄
30.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
4.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
6. 세무조사 및 지도
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8.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9. 세출결산
10. 세입세출의 현금정리
11.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
12.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13. 군 금고의 지도감독
14.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15. 보수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16)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17) 국채소화
18)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
19)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20)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21) 세입결산, 세외수입의 징수
22)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23) 국공유 재산의 관리
24) 국·공유 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25) 청사, 관사의 관리
26)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리 및 추진
27)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④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FAX민원 업무
3.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4.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5. 여권발급 업무
6. 건축물대장 관리
7.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8. 민원1회 방문처리 종합관리
9. 민원서류 검열, 수발
10.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처리
11. 지적전산운영
12. 지적공부 관리
13. 지적측량 검사
14.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업무
15. 지적공부정리
16. 지적공사 출장소 대행법인 지도감독
17.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18. 지적 재조사 사업
19. 지적공부관리시스템(KLIS) 운영
20. 새주소 부여사업
21. 지명관리위원회 운영지원
22. 공유토지분할업무
23. 토지거래규제 업무
24.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5.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26.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27.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8. 부동산투기 단속업무
29.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30. 비법인 등록번호 관리
31.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32.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33. 그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⑤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복지전산망 구축 및 관리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4. 지역복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및 사회복지계획수립
5.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6. 부랑인, 노숙자, 이재민 보호지원
7.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8.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9. 주민생활지원 사례관리
1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11. 긴급복지지원사업
12. 푸드뱅크 운영·지원
13. 한국복지재단 관련업무
1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16. 연말 이웃돕기 집중모금사업

17. 민간 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18. 복지등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신규조사
19.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2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2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24.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관리
25.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6. 자활후견기관 운영·지도·감독
27.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28.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29.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⑥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사업
5.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업무
6. 묘지, 매장, 화장 등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
7.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복지관련 법인, 시설에 관한 사항
8.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9. 노인,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 노인, 아동 보호
10. 장애인 복지 증진
11.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지원사업
12.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13. 장애인관련단체 운영·지원
14.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지원 및 건전육성
16.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시행
17.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18.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19.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

20. 기아·미아·부랑아·실종아동 예방사업
21. 건전가정기본법 관련사업
22.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조사
23.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24.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25. 성희롱, 성폭력 예방사업
26. 결혼이민자여성 복지증진사업
27. 보육시설 운영· 지도· 감독
28.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
29.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30. 그 밖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⑦문화체육정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문화 행정의 기획조정
3.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4. 출판, 문화단체 지도육성 및 감독
5.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군민회관, 체육관 관리운영
6. 문화재 보존관리
7. 향교, 사찰관리
8. 관광사업 종합기획
9. 관광자원개발 보호
10. 참외축제 종합 기획
11. 유원시설 업무
12. 체육에 관한 업무
13.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4.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5.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16.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17.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18.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19.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2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등록관리
21. 성주군합창단 운영 및 관리

22.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23.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24.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5.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
26. 통신기술, 전산교육 훈련
27. 정보통신 관련 업무전반
28. 정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9. 그 밖의 문화체육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⑧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5.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
6. 국립공원관리 업무
7.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9. 오수정화조 및 축산정화시설 지도·단속
10.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12. 쓰레기 종량제 업무
13. 재활용품 업무
14. 음식물쓰레기 업무
15.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
16.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
17. 단독정화조 사후관리
18. 폐기물 관련업체 사후관리
19.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관리
20.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업무
21.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업무
22. 낙동강 수질 보존
23. 오염총량 관리제 업무
24.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사항

25. 하수관거 설치 사업 및 빗물 펌프장 관리
26.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27. 마을하수도사업 설치·관리
28.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29.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30. 그 밖의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⑨친환경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농어촌 특산단지 사후관리
3. 영농조합법인 육성 관리
4. 농업경영인 지원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 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6.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7.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
8.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9. 농토배양 및 지력 증진
10. 친 환경농업육성 관리 지도
11. 농작물재해 대책
12. 농약·판매업 등록 신고 등 관리
13.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구입 사후 관리
14. 양곡의 수매, 가공, 수송, 보관
15.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16. 유통일반
17. 산지유통센터지원육성
18. 물류표준화사업
19. 거점 유통센터 지원 육성
20. 지역특화사업(유통부분)
21.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육성
22.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
23. 자체사업(유통부분)
24.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
25. 간이집하장 육성
26. 신활력사업 추진(유통분야)

27. 기타 농산물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28. 참외지리적 표시제 운영
29.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30. 브랜드 포장재 지원 육성
31.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
3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33.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34. 해외농업협력 업무
35. 농산물수출단지 지정, 육성
36. 정부양곡 수매, 가공, 수송, 보관
37.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38. 농산물 수출차액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39. 농산물 수출단체 및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40.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
41. 양곡가공업 관리
42. R. P. C 지원 및 관리
43. 기타 양곡 관리 업무
44. 농산물 직거래 추진
45. 참외아가씨(아줌마) 선발
46.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47. 참외 가격 동향
48. 경북 우수농산물 관리
49. 도자기 꿀병 지원사업
50.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51. 농관원 업무 협조
52.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53. 채소 주산단지 조성 및 육성관리
54. 전업농 육성
55. 자생 협업단지 조성 및 육성
56. 참외, 수박, 사과 수출단지 지정육성
57. 뽕밭 조성 및 잠업생산 수매 지도
58.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
59. 과수생산 수급 재해와 민원
60. 특작·화훼 유통 지원 사업

61. 화훼산업 육성
62. 지역생산물품의 판로 개척
63. 농산분야 세계각국 교류업무
64. 기타 산업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65.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66.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사업
67.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8.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69.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
70. 축산단지 조성업무 및 축산 재해 업무
71.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72. 가축 및 축산물 수급 조절
73. 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위생관리 지도
74. 축산물 영업장 등 유통시설 관리, 지도 감독
75. 가축질병 예방·검진 및 동물약품 유통관리
76. 가축위생업무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
77. FTA 관련 농산물 분야 종합대책 수립추진
78. WTO/FTA 대책에 따른 농산물 대응방안 개발등
79. FTA 관련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농산물 분야)
80.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총괄
81. 그 밖의 농정 및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새마을개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새마을운동 및 국민운동지원
3. 면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4. 새마을단체 및 지도자육성
5. 새마을교육 업무
6.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7. 광고물관리업무
8.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9. 새마을금고, 문고 지도육성
10. 비지정 관광지 관리
11. 바르게 살기운동 업무

12. 소도읍가꾸기 사업
13. 시범지역 개발사업
1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운영
15.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
16. 국토 및 지역자원의 이용과 개발
17.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18. 온천업무
19.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20.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21. 산업단지(지방, 농공)조성 및 관리
22.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3. 물가종합대책 수립조정
24. 공산품 품질관리
25.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26.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27. 가스안전관리
28.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29.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30. 실업대책 업무
31. 도계지역실태조사 계획수립
32. 도계정비사업 유지 및 관리
33. 도계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34. 가야산전망대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35. 가야산전망대사업 유지 및 관리
36. 국토기본법 운용 및 지역계획
37.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38.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39. 기반시설부담금법 운용
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
4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법 운용
4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43. 측량 및 지형 지리공간정보관리
44.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45.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46.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47. 방문판매업 관리
48. 통신판매업 관리
49. 승강기 관리
50.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51.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52. 중소기업 지원업무
53. 그 밖의 새마을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사방사업 및 사방지 관리
3. 가로수 식재 및 마을숲 조성
4. 조림 및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
5. 조경사업 및 사후관리
6.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실행지도
7. 숲 가꾸기 사업 지도
8.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연료 채취지도
9.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10. 산불예방 및 진화
11.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2.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관리
13. 토사석 채취허가지 사후관리
14. 보안림 사업허가 및 관리
15. 산지정화 및 산주교육
16. 임업기술 보급 및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17.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사후관리
18.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
19. 야생동물보호
20. 수렵면허증 발급관리
21.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
22. 야생화 식물원 관리운영 및 증식보급
23. 사회적일자리 창출(공공근로)사업
24. 임산물 굴채취 허가

25. 공익요원 복무관리
26. 임도시설 관리
27. 산림소득사업 관리
28.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29. 자연휴양림 지정, 조성 및 관리
30.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31. 수목원조성 및 관리
32. 수목장 조성 및 관리
33.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3. 토지수용 업무
4. 접도구역 관리
5. 전문건설업 등록 및 면허갱신 등 유지관리
6. 노상적치물 단속
7. 하천유수 사용 허가
8.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9.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10. 국유재산(건교부소관)용도폐지
11. 지하수개발 및 관리
1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이용부담금 관리
13.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14.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15.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16. 포괄사업비 집행
17. 범죄없는 마을 지정 및 관리
18. 비법정 시설물(안길,진입로,하수구 등)유지보수
19. 비법정 세천 유지보수
20.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1. 낙후지역개발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2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3.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사업

24.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26. 밭 기반정비 사업
2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추진
28. 면소재지 중심마을 종합개발 사업
29.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 수립 추진
30. 농촌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31. 농촌정주지원(도시민유치프로그램 등) 업무
32. 가뭄대책 및 지하수개발 사업
33. 각종 수리시설물 및 관정·양수기 관리
34. 군도개발 사업
35. 군도유지관리사업
3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7.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로 연결허가
38. 사도개설 허가
39.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40.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1. 교량관리 업무
42. 교통량조사 및 관리업무
43.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44. 도로순찰 및 유지관리
45. 도로보수원 관리
46.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47. 버스정류장, 주차장 업무
48.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49.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50.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51. 자동차보험업무
52. 창고업에 관한 업무
53. 그 밖의 건설 및 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재난상황보고 체계구축 및 종합관리

3.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동원계획수립 운영
4.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5.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물 개발보급
6. 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7.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8.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9. 재해 위험지역 조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10.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
11.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피해분석에 관한 사항
12.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13. 하천종합관리계획 수립
14. 하천감시 및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15.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16. 국가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17.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18.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19.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20.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 명령
2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22. 종합자원봉사자관리(총괄)
2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 육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24.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육성
25. 인력동원총괄계획 수립 시행
26.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2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2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29.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30.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31.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32. 그 밖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허가과(여유기구)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3.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민원
4.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준공
5. 폐기물관련업 허가 및 신고
6.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7.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8. 농지전용 허가 등
9.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협의
10. 토사석 채취허가
11.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협의
12.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13. 주거환경 개선사업
14.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5.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6. 무허가 건축물 단속
17.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18.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19.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0.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21.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2.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23.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24.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25.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26.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27.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28. 그 밖의 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79번지에 둔다.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5. 농촌여성 생활기술 개선 사업
6.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7.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8.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0. 농약공급, 병충해 방제

11.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 확산
12. 토양검정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3. 참외생태학습원 운영·관리
14.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사업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나. 공연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다. 공연준비 및 시간표관리, 전시실관리 및 홍보
 라. 문예진흥기금 및 입장권 관리
 마. 공연계획 및 무대조명, 시설운영관리
 바. 음향·통신시설 및 냉난방시설 운영관리
 사. 조경, 위험물, 주차장관리, 청사관리
 아. 그 밖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2. 문화여성복지센터
 가. 여성교육 기획 및 평가
 나.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라. 여성교육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마. 여성행사지원 및 전시회 운영

바. 이동여성회관 운영
사. 여성대학 운영
아.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및 생활적응 교육운영
자. 그 밖의 문화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제5장 읍·면

제15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새마을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별표 중 홈페이지 총괄분야 담당부서 “총무과”를 “문화체육정보과”로 하고, 문화/관광분야 담당부서 “새마을과”를 “문화체육정보과”로 하며, 재정/경제분야 담당부서 “지역개발과”를 “새마을개발과”로 하고, 사이버민원실 분야 담당부서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며, 특산물/수출분야 담당부서 “산업과”를 “친환경농정과”로 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담당부서 “총무과”를 “문화체육정보과”로 하며, 영어사이트분야 담당부서 “총무과, 새마을과, 산업과”를 “문화체육정보과, 친환경농정과”로 하고 기타분야 담당부서 “총무과”를 “문화체육정보과”로 한다.
③「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④「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새마을과장” 을 “문화체육정보과장”으로 한다.

⑤「성주군청소년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담당” 을 “장애인·청소년담당”으로 한다

⑥「성주군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⑦「성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종합민원처리과장, 지역개발과장” 을 “민원봉사과장, 새마을개발과장“으로한다.

⑧「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담당” 으로 한다.

⑨「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⑩「성주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담당” 으로 한다.

⑪「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⑬「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 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⑭성주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⑮「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⑯「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자치혁신과장” 을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 투자유치업무주무담당자”를 “교육발전기금업무담당주사, 교육발전기금 업무담당자”로 하며, 제14조제1항제1호중 “자치혁신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호중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을 “자치발전교육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⑰「성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성주군 보 건 소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6-1번지	성주군 일원
〃 선남지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697-3번지	선남면 일원
〃 용암지소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612-6번지	용암면 일원
〃 수륜지소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16-4번지	수륜면 일원
〃 가천지소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1번지	가천면 일원
〃 금수지소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106-1번지	금수면 일원
〃 대가지소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33-4번지	대가면 일원
〃 벽진지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810번지	벽진면 일원
〃 초전지소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10-37번지	초전면 일원
〃 월항지소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39-3번지	월항면 일원
선 남 면 도흥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333번지	도흥1,2,3리, 도성리, 용신1,2,3리
선 남 면 문방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520-1번지	문방1,2,3리, 오도리, 대산3리, 소학1,2리
선 남 면 명포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621-1번지	명포1,2리, 장학리, 유서1,2리
용 암 면 마월보건진료소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125-4번지	마월1,2리, 중거리, 계상리, 대봉1,2리
수 륜 면 남은보건진료소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62-1번지	남은1,2리, 보월1,2리,작은리
금 수 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455번지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대 가 면 용흥보건진료소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734-3번지	용흥1,2,3리, 흥산1,2리,옥성2리
벽 진 면 봉학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521번지	외기2,3리, 봉학1,2,3리, 용암1,2리
초 전 면 소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156-1번지	소성리, 월곡1,2리, 용봉1,2리
초 전 면 용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408-4번지	용성1,2,3리, 문덕2리,칠선1리
월 항 면 장산보건진료소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349-4번지	장산1,2리,수죽1,2리, 지방리,인촌1,2리,어산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 업 소 명	위 치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